

군산시 공고 제2014 - 1034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7. 1.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 6. 2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수익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지역의 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포함 신설(안 제18조의2)

나.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 감면율을 80퍼센트로 함 신설(안 제30조제3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다. 대부료 분할 납부 방법 개선(안 제33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5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시행령제32조제2항
100만원 초과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 (9월 이내 4회 분납)	300만원 초과 (9월 이내 4회 분납)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 완화 신설(안 제38조)

1)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요건

(현행) 1981년 4월 30일 이전 ⇒ (개정) 2003년 12월 31일 이전

2) 농지를 대부분아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수의매각 신설

마.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 납부와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 조정

(안 제33조 , 제36조, 제36조의2 , 제61조, 제61조의2)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사 용 료 대 부 료	· 연6%(영 제32조 2항 내지 제3항)	· 연3%(조례 신설)
매각대금	· 연3% ~ 연6%	· 연 2%~연3%(조례 개정)
변 상 금	· 연6%(영81조제1항)	· 연3%(조례 신설)
교환차금	· 연4%이상 6%이하(영 제11조의3)	· 연3% (조례 신설)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연6%(영 제82조)	· 연3%(조례 신설)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비

사. 기타 타 법령 인용 조문 반영(개정안 전반)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회계과(전화 063-454-2383, 팩스 063-452-8161, 전자우편 : goldsun222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전화 063-454-2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따라그”를 “따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으로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사항중”을 “심의사항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천만원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660제곱미터이하”를 “660제곱미터 이하”로, “2천만원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990제곱미터이하”를 “990제곱미터 이하”로, “2천만원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4조 중 “대한사항”을 “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회이상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를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실태조사시”를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로, “대장에기록하여야”를 “대장에 기록하여야”로, “대부시에는”을 “대부 시 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송등”을 “소송 등”으로, “재산(현황과약)”을 “재산(현황과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즉각시정하는등”을 “즉각 시정하는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매각대금을매각재산”을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은시장”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해서는공유임야관리”를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니하고다른”을 “아니하고 다른”으로, “사업(도로.하천등)”을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총괄 재산관리관”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규칙”을 “때에는 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중 “규칙으로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부재산이행정목적”을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건을붙이지”를 “조건을 붙이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부채납한경우”를 “기부채납한 경우”로, “건물등”을 “건물 등”으로, “한 한다”를 “한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기산일은기부채납일”을 “기산일은 기부채납일”로 한다.

제16조 중 “하고환경”을 “하고 환경”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목적을신중히”를 “목적을 신중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익허가하여”를 “수익허가 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에지장”을 “사용에 지장”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익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익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 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9조 중 “·수익허가부를비치”를 “·수익허가부를 비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때에는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허가기간”을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으로, “납부방법등을”을 “납부방법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익을목적”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산에대”를 “재산에 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이용료를직접”을 “이용료를 직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의하여입찰 조건”을 “의하여 입찰조건”으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납부 준용)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중 “인정하지않는다”를 “인정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관리를태만히”를 “관리를 태만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사업에직접”을 “공익사업에 직접”으로, “취하여야”를 “취하여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중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를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 기업 등”이라한다)”를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 기업 등”이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산업단지의전부”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및농공단지내”를 “및 농공단지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지식산업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단지안”을 “산업단지 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규정하고있”을 “규정하고 있”으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채석을목적”을 “채석을 목적”으로, “지형변경”을 “지형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같다.)이있”을 “같다)이 있”으로,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각각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창업지원”을 “창업 지원”으로, “지원관련개인”을 “지원관련 개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를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0명이상”을 “50명 이상”으로,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를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또는사용허가”를 “또는 사용허가”로, “광석 · 토석등의 채광물채취료는”을 “광석 · 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으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만,시가적용”을 “다만, 시가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합또”를 “조합 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평가액을합산”을 “평가액을 합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상으로결정한다”를 “대상으로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건폐율을역산”을 “건폐율을 역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산한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층건물”을 “2층 건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층이상”을 “3층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4층이상”을 “4층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층건물”을 “1층 건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상건물”을 “지상 건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하3층이”를 “지하3층 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상건물”을 “지상 건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하3층이”를 “지하3층 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가전용”을 “자가 전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적용한다.대부”를 “적용한다. 대부”로,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을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불합리하 다”를 “불합리하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항에대”를 “사항에 대”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 35조의 규정에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중 “2천만달러이상인”을 “2천만달러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300명이상인”을 “300명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50퍼센트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조달비율이100퍼센트인”을 “조달비율 이 100퍼센트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시지역안”을 “시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를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를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 러 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0명이상 300명미”를 “200명 이상 300명 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0퍼센트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비율이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를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를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시지역안”을 “시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

우”를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를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0명이상 200명미”를 “100명 이상 200명 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0퍼센트이상”을 각각 “50퍼센트 이상”으로,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를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를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시지역안”을 “시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를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위하여필요”를 “위하여 필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되거나중도”를 “되거나 중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단”을 “단,”로, “귀책사유로인”을 “귀책사유로 인”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대부기간”을 “및 대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에한한다)”를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최초년도에는 사용 개시일이전”을 “최초 년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2차년도부터는”을 “2차년도 부터는”으로, “30일이전”을 “30일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3퍼센트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를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로, “4퍼센트”를 “3퍼센트”로, “분할납부하게”를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으로, “시행을위”를 “시행을 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400제곱미터이하”를 “4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지를국가보훈처장”을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으로, “6퍼센트”를 “3퍼센트”로, “10년이내”를 “10년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를 “매각대금을”로, “연6퍼센트”를 “연3퍼센트”로, “분할납부하게”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장이인정”을 “시장이 인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로, “공장용지및”을 “공장용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를 “매각대금을”로, “3퍼센트”를 “2퍼센트”로, “붙여 분”을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매각대금을20년 이내의 기간으로”를 “매각대금을”로, “5퍼센트”를 “3퍼센트”로, “분할납부하게”를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게”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은다음”을 “대상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내”를 “지식산업센터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치률”을 “유치률 위하여”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이불가피”를 “것이 불가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이에위치하거나”를 “사이에 위치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시설부지상”을 “산업시설 부지상”으로, “생산시설소유자”를 “생산시설 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3,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를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2배이내”를 “2배 이내”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매각범위내”를 “매각범위 내”로, “· 건축법 ·”를 “건축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분이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39조 중 “종류는부동산관리신탁”을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으로 한다.

제40조 중 “수있도록”을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41조 중 “하되경제성”을 “하되 경제성”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신축시”를 “신축 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 다만”으로 한다.

제46조 중 “의하여건축위원회”를 “의하여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청사”를 “범위안에서 청사”로 한다.

제48조 중 “제공하기위”를 “제공하기 위”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준수”를 “다음사항을 준수”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과같이 해당”을 “다음과 같이 해당”으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사용료”를 “경우에는 사용료”로 한다.

제58조 중 “훼손하였거나예산”을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경우에는당해”를 “경우에는 당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의견서”를 “대한 의견서”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경우는 다음과 같다”를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규칙”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3퍼센트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률과최고액”을 “보상률과 최고액”으로 한다.

제63조 중 “때에는지체없이”를 “때에는 지체없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제33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6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관리책임) ① (생략)</p> <p>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u>따라그</u>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u>으로정한다.</p>	<p>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따라그</u> ----- ----- -----.</p> <p>③ ----- ----- ----- <u>규칙으로 정한다.</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업무) 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u>심의사항중</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대장가액 <u>2천만원이하</u>의 재산 취득 · 처분</p> <p>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동지역 : <u>660제곱미터이하</u>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u>2</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심의사항 중</u>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2천만원 이하</u>----- -----</p> <p>4. ----- -----</p> <p>가.----- <u>660제곱미터 이하</u>----- <u>2천만</u></p>

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읍·면 지역 :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원 이하-----

나.----- 990제곱미터 이하----- 2천만원 이하-----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 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① -----

-----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
----- 대장에 기록하여야 ----- 대부시에는 -----
-----.

1. (현행과 같음)

2. -----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3.·4. (생략)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과약)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시정하는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

3.·4. (현행과 같음)

5. 소송 등 -----
-- 재산(현황 파악)

④ -----

----- 즉각 시정하는 등

-.

제9조(사용 ·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
----- 매각대금을 매각재산-----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

-----.
-----.

② -----

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
해서는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
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
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
니하고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규칙이 정하는 바에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
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
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
로정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
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
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

-. -----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
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아니하
고 다른 -----
---- 사업(도로,하천 등)-----
----- 총
괄재산관리관-----
-.

② -----

----- 때에는 규칙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 규칙으로 정한
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

----- 기부재산이 행정
목적-----
-.

② -----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조건을 붙이지 -----
-----.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 · 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

① -----
----- 기부채납한 경
우-----
----- 건물 등 -----
----- 한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무상사용기간) -----

----- 기산일은 기
부채납일-----

-----.

제16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및 처분) -----

----- 하고 환경-----
-----.

제17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제17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

① -----
----- 목적을 신중히 -----

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생략)
-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

② -----

- 수익허가 하여-----.

- 1. (현행과 같음)
- 2. -----

----- 사용에 지장-----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익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익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9조(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
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
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부를비
치하고 기록 · 보존하여야 하
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
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 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
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

제19조(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
치) -----
----- · 수익허가부를 비치-----

-----.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때
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
에 따라 사용 · 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 납부방법 등을 --
-----.

② -----

----- 수익을 목적-----

-----.

③ -----

----- 재산에 대-----

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신설>

제2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 . -----

----- .

④ 법 제27조제4항-----

----- 이용료를 직접 -----

----- .

⑤ -----
----- 법 제27조제4항 ----- 의하여 입찰조건-----

-----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납부 준용)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연고권 배제) -----

----- 인정하지 않는다-----

----- .

한다.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
----- 관리를
태만히 -----

-----.

② -----

----- 공익사업에
직접 -----

----- 취하여야
-----.

③ -----

----- 불가능하다고
인정되-----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
-----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

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 기업등” 이라한다)에 대부 ·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산업단지의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생략)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

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이라한다)-----

-----.

1. -----

-----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일반산업단지-----
----- 및 농공단지 내-----

3.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식산업센터로-----

4. -----
----- 외
국인 투자지역-----
5. -----
----- 산업단지 안-----

6. (현행과 같음)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 ·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생략)

③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2. (생략)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규정하고 있-----

 ----- 50 이상-----
 ----- 채석을 목적-----

 ----- 지형 변경-----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25 이상----- .

1. 2. (현행과 같음)

3. -----

 ----- 같다)이 있-----

 ----- 25 이상-----
 ----- .

 ----- 10 이상-----
 ----- .

④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 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개인 · 단체 · 법인 ·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 · 인천 ·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④ -----

----- 10 이상-----.

1.·2. (현행과 같음)

3. -----

----- 벤처기업 -----

4. ----- 창업
지원-----
----- 지원관련
개인 -----

5. -----
----- 인
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
제1항제13호-----

6. -----
----- 50명 이상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8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6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 · 토석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 · 토석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

제28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

----- 또는 사용허가----- 광석 · 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 50 이상-----.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조합 또 -----

⑤ -----

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50 이상-----

 -----.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
 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을합산하여 결정한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평가액
 을 합산-----.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
 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
 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를 대상으로결정한다. 다만, 경
 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
 (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
 다.

② -----

 ----- 대상으로
결정한다. -----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
 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
 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금액으로 한다.

 ----- 건폐율을
역산-----

 -----.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
 우

③ -----

 ----- 합산한 금액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

1. ---- 2층 건물-----
 2. ---- 3층 이상 -----

는 경우

가. ~ 다. (생략)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 나. (생략)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 나. (생략)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4층 이상-----

3. ----- 1층 건물-----

4. 지상 건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지하3층 이-----

5. 지상 건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지하3층 이-----

④ -----

----- 자가 전용-----

----- 적용한다. 대부-----

-----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⑤ -----

 ----- 불합리하다 -----

 ----- 사항에 대 -----

 ----- .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

 ----- .

1. -----

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신 설>

-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100퍼센트인 사업
- 마. (생략)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

----- . <후단 삭제>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나.----- 2천만달러 이상인 --
- 다.----- 300명이상인 --
- 라.----- 50퍼센트 이상-----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
- 마. (현행과 같음)
- 바.-----

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

시지역 안

사.-----

---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

2. -----

가.-----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

나.----- 200명 이상 300명 미-----

다.----- 50퍼센트 이상-----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

라.-----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

마.-----

시지역 안

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

바.-----
---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
-----.

가.-----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

나.----- 100명 이상 200명 미-----

다.----- 50퍼센트 이상

---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

라.-----
-----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

마.-----

시지역 안-----

바.-----

되거나중도에 취소 ·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 ·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인한 중도 취소 · 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략)

제32조(대부료등의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 · 수익허가 및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생산 · 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한한다)로 사용 · 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생략)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 개시일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
----- . 단, -----
----- 귀책사유로인

-----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등의 관한 특례) --

----- 및 대부
기간-----

----- .

1. (현행과 같음)

2. -----

----- 경우에
한한다)-----

3.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 최초 년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2차년도 부터는 -----
----- 30일 이
전-----.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100만원 -----
--
- 2. 200만원 -----

- 3. 300만원 -----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제32조 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3퍼센트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략)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퍼센트-----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 ----- .

1. · 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시행을 위-----

4. -----

----- 400제곱미터 이하-----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

② -----

 ----- 부지를 국
 가보훈처장-----

 ----- 3퍼센트 -----
 ----- 10년 이내-----
 -----.

③ -----
 ----- 매각대금을-----
 ----- 연3
 퍼센트----- 5년 이내
 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 -.

1. · 2. (현행과 같음)
3. -----
 ----- 시장
 이 인정-----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

 ----- 공장용지 및 -----

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시행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
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
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
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
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
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

----- 매각대
금을-----
----- 2퍼센트----- 붙
여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
-.

⑤ -----

----- 매각대금을-----

- 3퍼센트----- 20년 이
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게
-.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
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과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생략)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

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조성원가 매각) -----

 ----- 대상은 다음 -----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 일반산업단지-----
2. ----- 지식산업센터 내-----
3. (현행과 같음)
4. ----- 유치를 위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
 는 것이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 폐구거 · 폐제방으
 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
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
 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
 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
 하, 읍 · 면지역에서는 3,00
 0제곱미터이하로서 1989년 1
 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
 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

하여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것이
불가피-----
 -----.

1. 삭 제

2. -----

 ----- 사이에 위
치하거나 -----

3. ----- 산업시설 부
지상----- 생산시설
소유자-----

4. -----

 ----- 3,000제곱미터 이
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
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부동산관리신탁 ·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 종류는 부동
----- 산관리신탁 -----

-----.

제40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공유임야관리) -----

----- 수 있
----- 도록 -----.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 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

----- 하되 경
----- 제성 -----
-----.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 사업소 · 읍 · 면 · 동 청사 신축시 위치 · 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다만, 매년 청사 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① -----
----- 신축 시 -----

----- 다만--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

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 8. (생략)

-----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 범위안에서 청사-----.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정의) -----
----- 제공하기 위-----.

제51조(사용책임) -----
----- 다음사항을 준수-----.

1. ~ 4. (현행과 같음)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다음과 같이 해당-----.

1. ~ 8. (현행과 같음)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1. ~ 3. (생략)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
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
였거나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
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
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
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을 부과 · 징수하고자 할 경우
에는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
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
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
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
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
지에 대한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
우는 다음과 같다.

-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

제55조(사용료의 면제) -----

----- 경우에는 사
용료-----.

- 1. ~ 3. (현행과 같음)

제58조(변상조치) -----

----- 훼손하였거나 예
산-----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

----- 경우에는 당
해 -----

② -----

----- 대한
의견서-----.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따라 -- --
----- 경우 연 3회
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호
와 같이 한다.

- 1. 100만원 -----
- 2. 200만원 -----

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

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

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6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3. 300만원 -----

4. 400만원 -----

② -----

----- 경우에는 규

칙-----

----- .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3퍼센트로 한다.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보상

률과 최고액-----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합필의 신청) -----

----- 때에는

지체없이 -----

-.

군산시 공고 제2014-1054호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원활하게 운용함에 있음

2. 주요내용

-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안 제2조)
- 군산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3조~제7조)
- 사용승인 절차 및 통지(안 제12조~제13조)
- 공동상표 표시방법(안 제15조)
- 사용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안 제18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농수산물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농수산물유통과(전화 063-454-3012, FAX 063-454-300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수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계 (063-454-3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품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산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향만경제국장, 시의회경제건설위원, 농정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산물품질관리원, 학계,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유통 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 담당계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심의시 개최한다

-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간사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1. 품질관리원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품질관리)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 나. 공동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
-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 미달품의 혼입여부
-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 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유통 여부
-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용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3호서식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 별지 제3-1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3-2호서식
4. 조례 제6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농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생산자조직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②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실시한다

제11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농특산물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승인 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 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승인 통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승인 번호부여) 시장은 사용승인시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표시방법)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모양·색상, 사용규정은 새들군산 표준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③ 포장재가 아닌 다른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사용시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① 공동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 포장재·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7조(포장재관리)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공동상표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분기 1회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에 의한 기록·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규칙 제000호, 2014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

상 품 류	품 목 수	세 부 품 목
제29류	33개 품목	<p>냉동콩, 냉동된 완두콩,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보존처리한 멜론,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양념된 피클, 장아찌, 장아찌(울외를 이용한 것), 절임오이, 보존처리된 렌즈콩, 보존처리된 완두콩, 식용 들기름, 식용 참기름, 식용 콩기름, 식용유, 살겨유, 옥수수기름, 참기름, 소금에 절인 배추, 도라지환(丸), 도라지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오가피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잼, 냉동가지, 냉동된 채소(냉동채소), 냉동배추, 냉동버섯, 냉동양파, 냉동오이, 냉동당근, 냉동마늘, 냉동인삼, 건시(꽃감)</p>
제30류	46개 품목	<p>감자가루, 도정한 곡물, 보리가루. 식용 감자가루, 식용 걸겨를 없앤 귀리,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곡분(식용 곡물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 울무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현미가루, 쌀(백미), 쌀가루, 옥수수가루, 으깬 귀리, 으깬 보리, 콩가루, 탈곡한 귀리, 탈곡한 찰흑미, 탈곡한 흰찰쌀보리, 탈곡한 찹쌀, 탈곡한 현미, 탈곡한 보리, 탈곡한 쌀,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굵게 간 옥수수, 메주, 약과, 엿, 전과, 한과,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장(醬)류, 청국장, 식초, 차, 보리차, 도라지차, 울무차</p>

상 품 류	품 목 수	세 부 품 목
제31류	58개 품목	<p>강낭콩, 미가공 곡물, 미가공 귀리, 미가공 두류, 미가공 들깨, 미가공 메밀, 미가공 밀, 미가공 벼, 미가공 보리, 미가공 수수, 미가공 참깨, 벼, 생렌즈콩, 생옥수수, 생완두콩, 생잠두콩, 생콩, 생팥, 땅콩, 생밤, 생포도, 수박, 앵두, 은행, 자두, 잣, 참외, 포도, 호두, 배, 멜론, 단감, 호박, 단호박, 밤호박, 애호박, 샐러드용 치커리, 부추, 상추, 오이, 신선채소, 양파, 치커리뿌리, 시금치, 생버섯, 감자, 생감자, 가지, 고구마, 방울토마토, 생도라지,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토마토, 쥐눈이콩(신선한 것), 검은콩(신선한 것), 신선한 과실, 신선한 과실 및 채소</p>
제32류	17개 품목	<p>감주(음료), 과일주스,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냉동과일음료, 밀감수, 비알콜성 음료, 포도주스, 포도액, 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인삼주스(음료), 음료용 인삼엑기스, 음료용 인삼분말, 비알콜성 과일 엑기스, 비알콜성 과일주스음료, 채소주스음료,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음료</p>
제33류	13개 품목	<p>쌀로 빚은 술, 인삼주, 탁주, 막포도주, 매실주, 머루주, 배술, 버찌주, 사과주, 식탁용 포도주, 천연발포성 포도주, 포도주, 약용주(藥用酒)</p>

[별표 2]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점
1. 영농(생산,영업)경력	7	○ 영농(생산,영업)경력 5년이상	
	6	○ 영농(생산,영업)경력 3~5년미만	
	5	○ 영농(생산,영업)경력 3년미만	
2. 유명도 및 성가도	7	○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6	○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	8	○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6	○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8	○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6	○ 판매처 일부 확보	
	5	○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영농(생산,영업)장소 입지	8	○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7	○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기준 적합성	9	○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7	○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5	○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생산품 유통상태	9	○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5	○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점
8. 생산시설 및 자재 등	9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9. 자체품질관리 수준	9	○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 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관리가 체계적임	
	7	○ 자체품질관리사는 없으나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	○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10. 객관적 품질관리 실시	9	○ 년3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품질관리 실시	
	7	○ 년1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품질관리 실시	
	5	○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9	○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7	○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	○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8	○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 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 제출시 건당 2점 부여	
합 계	100		점

□※ 평가방법 및 적합 판정기준

- 상기점수는 기준점으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별표 3]

공동상표 사용승인번호 부여방법

○ 번호체계

00-00-000(승인년도-상품류-일련번호)

- 승인년도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년도를 표기
- 사용기간 연장승인은 기번호 부여
- 상품류

상품류	쌀	잡곡류	채소류	과일류	두류	서류	버섯류	가 공 농특산물	기타
번호	01	02	03	04	05	06	07	08	09

- 일련번호 : 승인 순서에 의하여 부여

○ 부여예시

- 2012년도에 쌀을 첫 번째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 12-01-001
-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당초인증 : 12-03-001
 - 기간연장 : 12-03-001

[별표 4]

행정 처 분 기 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행정 처 분 대 상 행 위	처분기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정명령	사용정지3월	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	“	“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	“	“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	사용정지1월	“	“
6.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시정명령	”	”
7.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정지3월	사용정지6월	“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용정지3월	“

행정 처분 대상 행위	처분기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9.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정지3월	사용정지6월	승인취소
10. 농약 안전사용 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	“	“
11.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용정지3월	“
12. 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	“	“
13.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	사용정지3월	승인취소	
14.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	“	
1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	“	
16.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	“	
17.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용정지6월	승인취소
18.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	승인취소	
19.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취소		
20. 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	사용정지3월	승인취소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p>제 호</p> <p>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품질관리원증</p> <p>소 속 :</p> <p>성 명 :</p> <p>주민등록번호 :</p> <p>위 사람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p>군 산 시 장 (인)</p>	<p>증 명 사 진</p>
---	--------------------

49mm × 75mm(인쇄용지(특급)190g/m²)

(뒤 쪽)

<p>주 의 사 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람은 군산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출하전 검사 및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며 지도·단속 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3-1호서식]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생산자명(단체명)		대 표 자	(참여농가수 호)
품 목		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생산자(단체) 자질		
	운영경력	년 월 일부터 (경력 년)	
	대외신용,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
	상표사용출하량	톤,	매
	판매처 확보		
2. 생산여건	생산입지조건		
	생산기반규모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현황		
	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	선별방식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자체품질관리		
	교육훈련실적		
	집하선별시설		
	선별기계장비		
	저온, 예냉시설		
	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 반 여 건 : 생산자(단체) 자질,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 산 여 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이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 첨부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

1. 신청내용

신청인	단체명		참여농가수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 (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m ²	생산계획량	
	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

분야	항목	배점	평점
가. 일반여건	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30	
나. 생산여건	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30	
다. 품질관리여건	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30	
라. 우수조직인센티브	① 우수조직인센티브	10	
계	10개항목	100점	점
주거래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 승 인 번 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품목명 (품 중) :

○ 사 용 기 간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동상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군산시 공고 제2014-1056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3177호('12. 10. 08)]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5090호('14. 01. 14)]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반영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부분

-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회피에 관한사항 신설 (안 제65조, 제67조의2)
- 2) 위원회 구성 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사 배제 (안 제65조)
- 3)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 규정 신설 (안 제65조)
- 4)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반복심의 횟수 규정 신설 (안 제67조)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1)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방식을 네거티브방식(입지를 제한하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 (별표 6, 7, 8, 9, 10, 13, 19)
 - ▶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중 입지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한함
- 2)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10%로 확대 (안 제9조)
 - ▶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존 5% 적용
- 3)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시가화지역은 건폐율, 시가화지역은 용적률을 완화 (안 제55조, 제60조)
- 4) 계획관리지역의 '03.1.1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 등의 증축시, 조례 제20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 절차 제외 (안 제55조)
- 5)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모든 한옥 및 전통사찰 등에 대하여 건폐율 완화 적용 (안 제55조)
- 6) 방화지구 내 건폐율 완화대상을 주요구조부 및 외벽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로 한정 (안 제58조)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안 제60조)
- 8) 일반숙박시설에대한 입지 요건을 생활숙박시설에도 적용 (안 제33조, 제34조)

다. 자치법규 개선관련 조례 검토

- 1)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용적률 완화 (안 제60조)
-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건폐율·용적률 완화 (안 제56조, 제61조)
- 3)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입지허용 (별표 16)
- 4) 보전관리지역 내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제외) 입지허용 (별표 17)
- 5)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부분에 성별고려 내용 추가 (안 제65조)

라. 기타사항

-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2)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입지 허용 (별표 15)
- 3) 지난 조례개정이후 확인된 누락사항 및 오탈자 정비
-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장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063-454-3505, F.063-452-817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병화(063-454-35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호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을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9조의2”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1항제8호”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건축신”을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2조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3조제9호 중 “일반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4조제7호 중 “일반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기원, 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6조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6조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7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제48조제1항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을 “가목(바닥면적)”으로 한다.

제5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16호 단서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단서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5항제4호”로, “충분히”를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6조제4호 중 “4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조제5호라목”을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조5호가목”을 “제2조8호가목”으로, “제7호”를 “제12호”로 한다.

제58조 중 “같은 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1호 중 “이하”를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이하”를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이하”를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추가건설을 허용”을 “추가건설을 허용”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

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100퍼센트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5호다목”을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2조제1항”을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 중 “영 제8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위원장 및 항만경제국장·건설교통국장”을 “항만경제국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중에서”를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65조제5항 본문 중 “하되”를 “3년까지 총6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67조의2제1항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저해를 가져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자
3.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제6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 1항

각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 제척된다.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을 “법 제59조”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담당(주사)”을 “담당(계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 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p> <p>10. (생략)</p>	<p>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 사항) ----- ----- ----- -----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p> <p>10.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회의 구성 운영 등은 관하여는 필요시 따로 정하는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p>	<p>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9조의2----- ----- ----- ----- ----- -----</p> <p>-----.</p>
<p>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영 제43조 제4항제8호----- ----- 지 구단위계획구역----- -----</p> <p>1. ~ 7. (현행과 같음)</p>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 4. (생략)

5. 토지분할

가.·나. (생략)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생략)

6. (생략)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3. (생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생략)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1. -----

----- 건축
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조 제2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

2. ~ 4. (현행과 같음)

5.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일반재산-----

--

라.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

1. ~ 13. (현행과 같음)

14. -----
--- 자연순환 관련 시설

15. (현행과 같음)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 8. (생략)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 10. ~ 15. (생략)
-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17. (생략)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 6. (생략)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 8. ~ 13. (생략)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15. (생략)

제35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생략)

용도제한) -----

-----.

- 1. ~ 8. (현행과 같음)
- 9. -----
-----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 10. ~ 15. (현행과 같음)
- 16. -----
---- 자연순환 관련 시설
- 17. (현행과 같음)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

- 1. ~ 6. (현행과 같음)
- 7. -----
-----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 8. ~ 13. (현행과 같음)
- 14. -----
---- 자연순환 관련 시설
- 15. (현행과 같음)

제35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

-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 13. (생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생략)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 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9. (생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 12. (생략)

② · ③ (생략)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1. (생략)

2. -----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기원, 아목--

3. ~ 13. (현행과 같음)

14. -----
--- 자연순환 관련 시설

15. (현행과 같음)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 제한) -----

----- 제1항--
----- 지구단위계획-----
-.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자연순환 관련 시설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 14. (생략)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1. (생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13. · 14. (생략)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1. (생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13. · 14. (생략)

② (생략)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생략)

12. -----
--- 자연순환 관련 시설

13. · 14.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

-----.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3. · 14. (현행과 같음)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자연순환 관련 시설

13.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위락지구
- 2. 리모델링지구
- 3. ~ 7. (생략)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15. (생략)
-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 17. · 18. (생략)
-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

2. -----
가목(바닥면적)-----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 <삭 제>
- <삭 제>
- 3. ~ 7. (현행과 같음)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
-----.

- 1. ~ 15. (현행과 같음)
- 16. -----.
-- 영 제84조제8항-----

-----.

- 17. · 18. (현행과 같음)
- 19. -----.
-- 영 제84조제5항제4호-----

----- 충분히

·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21.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

20.·21. (현행과 같음)

② -----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

-----.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

-----.

1. ~ 3. (현행과 같음)

4. -----
----- 60퍼센트 -----

5. -----
- 제2조제8호라목-----

6. -----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10. (생략)
-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 14. ~ 21. (생략)
- ②·③ (생략)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 제2조8호가목

----- 제12호-----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

-----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 11. ----- 이하
(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
- 12. ----- 이하
(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 13. ----- 이하
(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 14. ~ 21.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 설>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② 제6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재개발

--- 제16조제1항-----
----- 추
가건설을 허용----- . <단서 삭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

----- .

1. 2. (현행과 같음)
3. -----
----- 100퍼센트 이하
4. -----
- 제2조제8호라목-----

② 제60조제1항-----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 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생략)

제65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항만경제국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 시 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 <단서 신설>

2.·3. (생략)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신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항만경제국장·건설교통국장-----
-----.

④ -----
-----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

-----.

1. -----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2.·3. (현행과 같음)

⑤ -----
-- 3년까지 총6년 --. -----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67조의2제1항의 제척·회피

제67조(회의운영) ①·② (생략)

<신설>

<신설>

-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저해를 가져온 경우
-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자
- 3.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4.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제67조(회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 1항 각호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 제척된다.

-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3.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이 된다.

③ (생략)

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 -----

-----.

1. ----- 법 제59조-----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담당(계장)-----.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 (생략)</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u>가목 내지 사목</u>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p> <p>3.·4. (생략)</p>	<p>【별표 1】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u>가목</u></p> <p><u>부터 사목까지</u> -----</p> <p><u>해당</u> -----</p> <p>-----</p> <p>3.·4. (현행과 같음)</p>
<p>【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1.·2. (생략)</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p> <p>4. ~ 6. (생략)</p>	<p>【별표 2】 -----</p> <p>-----</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p> <p>----- <u>해당</u> -----</p> <p>-----</p> <p>-----</p> <p>4. ~ 6.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에 의한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p>	<p>【별표 3】 -----</p> <p>-----</p> <p>-----</p> <p>-----</p> <p>-----</p> <p>-----</p> <p>-----</p> <p>-----</p>

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 11. (생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 17. (생략)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6. (생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4.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5. ~ 11. (현행과 같음)

12. ----- 해당

13. ~ 17. (현행과 같음)

【별표 4】 -----

--

1. ~ 6. (현행과 같음)

7. -----
----- 해당 -----

----- 해당 -----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 12. (생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같은호 가목·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생략)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생략)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8. ~ 12. (현행과 같음)

13. -----

----- 해당용도 -----

14. -----
----- 지식산업센터·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 -----

-----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세탁업 -----

가. (현행과 같음)

나. -----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같은법 -----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

마.·바. (생략)

15. ~ 20. (생략)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6. (생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 12. (생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 19. (생략)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전용공

마.·바. (현행과 같음)

15. ~ 20. (현행과 같음)

【별표 5】 -----

--

1. ~ 6. (현행과 같음)

7. -----

----- 해당 -----

----- 해당 -----

8. ~ 12. (현행과 같음)

13. -----

----- 해당 -----

14. ~ 19. (현행과 같음)

【별표 11】 -----

1. ~ 4. (현행과 같음)

5. -----

----- 해당 -----

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 13. (생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 17. (생략)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6. (생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8.·9. (생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및 동호마목에 해당하는 것

11. ~ 16. (생략)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8. ~ 20. (생략)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는건축물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축

6. ~ 13. (현행과 같음)

14.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 17. (현행과 같음)

【별표 12】 -----

1. ~ 6. (현행과 같음)

7. -----
-----해당-----

8.·9. (현행과 같음)

10. -----

-- 같은호 -----

11. ~ 16. (현행과 같음)

17.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 20. (현행과 같음)

【별표 14】 -----

할수있는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사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 6. (생략)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 6. (생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8. ~ 10. (생략)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현행과 같음)

2. -----
----- 가
목, 사목 및 아목-----

3. ~ 6. (현행과 같음)

【별표 15】 -----

1. ~ 3. (현행과 같음)

4. -----
----- 해당 -----

5. · 6. (현행과 같음)

7. -----

----- 직업훈련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연구소(농·임·축·수산업)-----

8. ~ 10. (현행과 같음)

11. -----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
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
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
로 한정한다) 및 제1차산업생산
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가. (생략)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
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
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
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
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
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
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
에 해당하는 것

마. (생략)

12. ~ 15. (생략)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

가. (현행과 같음)

나. -----

----- 같은법
시행령 ----- 1종
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다. -----

----- 같은법 -----

라. -----

----- 같은법시행령 -----
----- 1종사업장부터 4종사
업장까지-----

마. (현행과 같음)

12. ~ 15. (현행과 같음)

16.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축할수있는건축물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생략)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사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바목에 해당하는 것
 - 3. ~ 8. (생략)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10. · 11. (생략)
- <신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시행령및우리시조례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 3. (생략)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같은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

- 1. (현행과 같음)
- 2. -----

- 사목 및 아목-----

- 3. ~ 8. (현행과 같음)
- 9. -----
----- 같은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

- 10. · 11. (현행과 같음)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

【별표 18】 -----

- 1. ~ 3. (현행과 같음)
- 4. -----
----- 해당 -----

----- 아목 및 너
목-----

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3. ~ 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같은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및 도시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11. (생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 범위 -----

2. -----
----- 가
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 --
--

3. ~ 5. (현행과 같음)

6. -----

마목부터 아목까지 -----

7. (현행과 같음)

8. -----
----- 가목 및
나목 -----

【별표 22】 -----

1. ~ 11. (현행과 같음)

12. -----

가. (생략)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생략)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13. ~ 15. (생략)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 19.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

----- 같은법 -----
-----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다. (현행과 같음)

라. -----

----- 같은법 -----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13. ~ 15. (현행과 같음)

16.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 19. (현행과 같음)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 한 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1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
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
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 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
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 가. 별표 15 제1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 군산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참고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30조제19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제외한다)
-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연 락 처	(063) 454-3505

군산시 공고 제1014-1067호

『군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6. 28

군 산 시 장**1. 개정이유**

- 가. 「청소년 보호법」(법률제11048호 2011.9.15)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나.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 「청소년 보호법」 제31조로 변경하여 관련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군산시장 누락된 사항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 기타 ⇒ 그 밖에
 - 규정에 의한 ⇒ 따라

- 하오 ⇒ 오후
- 상호 ⇒ 오전
- 출입구 ⇒ 해당 구역 출입구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여성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전화063-454-3242, 팩스063-452-94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전화 063-454-3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군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 을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행금지구역” 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으로, “시장” 을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을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으로,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 을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 로, “청취하여야” 를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로 한다.

제5조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를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출입구” 를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당” 을 “시장은 해당”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청소년보호법 제25조</u>의 규정에 의한 <u>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u>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u>----- ----- -----.</p>
<p>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u>청소년 통행금지구역</u>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 <u>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u> -.</p>
<p>1. <u>청소년통행금지구역</u> 가. (생략) 나. <u>기타</u>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p> <p>2. <u>청소년통행제한구역</u> 가. ~ 다. (생략) 라. <u>기타</u>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p>	<p>1. ----- 가. (현행과 같음) 나. <u>그 밖에</u> ----- -----</p> <p>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그 밖에</u> ----- ----- -</p>
<p>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생략) ② <u>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u> <u>청소년통행제한</u> 시간은 <u>하오 7시부터</u></p>	<p>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오후 7시부터</u></p>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다음날 오전 -----
-----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

----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 ----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
 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
 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
 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
 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
 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 -----

 -----.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1014-1068호

『군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6. 30

군 산 시 장**1. 개정이유**

가. 위 규칙의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 법률제11048호 2011.9.15전 부개정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4102호 2012.9.14 전 부개정으로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44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관련법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종전의 감경기준 별표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함(안 제2조)
- 다. 종전의 감경대상기준에서 법 위반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를 위반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을 1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와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로 명확히 적용하고자 함(안 제3조)
- 라.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에 대하여 적용함 (안 제4조)
- 마. 별지 서식 적용 (별지 1호 ~ 별지 4호)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여성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전화063-454-3242, 팩스063-452-94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전화 063-454-3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전부개정안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감경기준)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로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시장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기준 비교표

감 경 대 상	감 경 륜 (%)		증빙자료 및 확인사항
	전	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50	수급자증명서 등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0	50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1급 ~ 3급	50	장애인등록증
	4급 ~ 6급	신설30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25	50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5.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자	50	50	피해사실 확인서 등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0	50	법원증명서 등
7.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자	기소50 선고25	50	법원서류 등
8.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해 위반한 자	25	50	경찰서 확인서 등
9.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자		신설50	경찰서 확인서 등
10. 회귀난치성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0	50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50	30	신분증
12. 만65세 이상 고령자	50	30	신분증
13.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신설30	과징금처분대상확인 등
14. 청소년보호육성등의 공로로 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5년이내)	25		
1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25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감 경 대 상	감경률 (%)	증빙자료 및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급자증명서 등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0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1급 ~ 3급	장애인등록증
	4급 ~ 6급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5.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자	50	피해사실 확인서 등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0	법원증명서 등
7.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자	50	법원서류 등
8.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해 위반한 자	50	경찰서 확인서 등
9.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자	50	경찰서 확인서 등
10. 회귀난치성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0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30	신분증
12.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신분증
13.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30	과징금처분대장확인 등
1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0	독립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업 소 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경 처분	감경사유			
	감경내용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1014-1069호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6. 28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가. 「청소년 보호법」(법률제11048호 2011.9.15)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나.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보호법」 제44조”를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로 변경하여 관련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 나.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으로 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하여 현금지급에서 상품권지급으로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 자 함(안 제7조제2항)
- ⇒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 기타 ⇒ 그 밖에
- 규정에 의한 ⇒ 따라, 따른
- 자 ⇒ 사람
- 신고일로부터 ⇒ 신고 날로부터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여성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전화063-454-3242, 팩스063-452-94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전화 063-454-3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로 한다.

제3조 중 “의한” 을 “따라” 로, “별표 1의 규정” 을 “별표 1” 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3조에 따른” 으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4조에 따라” 로, “자로” 를 “사람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고일로부터” 를 “신고 날부터”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를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6조에 따른”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 ----- ----- -----.</p>
<p>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p>	<p>제3조(신고대상) ----- 따라 ----- ----- 별표 1----- -----.</p>
<p>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p>② 제1항의 구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 ----- 그 밖의 ----- ----- 각 호-----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 <p>② 제1항에 따라----- ----- ----- ----- -----.</p>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생 략)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 부터 6개월 전에 군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
 ----- 제4조에 따라--

 ----- 사람으로 -----

 -----.

② -----

 -----.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
2. (현행과 같음)
3. ----- 신고 날부
터-----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① -----
 ----- 다른 지급대상자의 신청
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8조(환수) ----- 제 6조에 따른-----

-----.

군산시 공고 제2014-1073호

군산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폐지 예고

1. 폐지이유

비지정관광지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비지정관광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군산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가 시 관내 비지정관광지 부재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폐지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전화 454-3332, 팩스 454-33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계(전화 454-30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326호

군산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폐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이하 비지정관광지라 한다)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지정관광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읍·면·동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비지정관광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비지정관광지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96.12.16>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지정관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비지정관광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①시장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에 의하여 비지정관광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시장은 비지정관광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①비지정관광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비지정관광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위탁 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시장이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의허가 및 제한) ①비지정관광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부지의 사용
2. 공작물의 설치
3. 물품판매 및 상행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비지정관광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판단한 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식에 의한 비지정관광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 취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의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
5. 기타 비지정관광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7조의2(청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98.04.27>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수수료)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지정관광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수수료에 의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비지정관광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 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2. 수수료는 시장이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3.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역에는 비지정관광지 입구 또는 중간지점에 별표 2와 같은 안내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당해 비지정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3. 6세미만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5. 기타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상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을 시킬 필요가 있는 자

제13조(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상)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 대하여 제9조제2항 별표 1 기준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사용) ①징수된 수수료는 관광지내의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16 조례제 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27 조례제 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4-70호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연번	위 치	지 정 내 용			지 정 사 유	비 고
		유 형	등 급	면 적(m ²)		
1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164 일원	붕 괴 위험지역	D	1,300	풍화에 따른 상단부분 낙석 및 토사유실 발생	
2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249 일원	붕 괴 위험지역	E	3,800	세굴에 의한 토사유실 발생, 낙석방지망에 포획 붕괴우려	
3	군산시 금동 9-2 일원	붕 괴 위험지역	D	8,100	암반사면 상부의 토사유실과 낙석발생	
4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103 일원	붕 괴 위험지역	E	900	상부 토사가 흘러내려 주택피해우려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군산시

5.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4년 6월 27일

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우리시 관리부서(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7.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063-454-3865)

2014년 6월 2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고시 제2014-71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4. 7. 1

군산시장 (인)


주 소	전북 군산시 중동 272-5번지		
성명(법인명)	서해조선 (대표 여상복)		
하 천 명 칭	경포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전북 군산시 중동 271-1번지 외 4필지		
점 용 목 적	조선소(선가대) 운영을 위한 하천점용		
점 용 면 적	2,639m ²		
최 초 허 가 일	2014년 1월 1일		
점 용 기 간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군산시 고시 제2014-72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7. 1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40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7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84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4-73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대야면 지경리 경지정리 사업지구 측량에 따른 지적도근점(41점), 옥구읍 옥정리 171-4번지 일원 기초측량에 따른 지적도근점(15점), 2014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에 따른 지적도근점(62점), 군산쌍용예가아파트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적도근점(2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6월 27일

군 산 시 장

번호	기준점번호	평면직각좌표(m)		세계측지계			투영원점	정표고(m)	소재지	관측일자	표지재질
				위도(도-분-초)		평면직각좌표(m)					
				경도(도-분-초)							
				타원체고(m)							
1	52364	X	269281.18	35°55'25"	X	369587.78	중부	4.26	대야면 지경리 1637-19	2014. 05.09	철재
		Y	180742.07	126°47'15"	Y	180814.64					
2	52365	X	269313.83	35°55'26"	X	369620.43	중부	4.52	대야면 지경리 1646-1	2014. 05.09	철재
		Y	180839.19	126°47'19"	Y	180911.75					
3	52366	X	269199.33	35°55'22"	X	369505.94	중부	4.06	대야면 지경리 1645-5	2014. 05.09	철재
		Y	180990.71	126°47'25"	Y	181063.28					
4	52367	X	269087.36	35°55'19"	X	369393.97	중부	4.35	대야면 지경리 1645-8	2014. 05.09	철재
		Y	181033.59	126°47'26"	Y	181106.16					
5	52368	X	268932.32	35°55'14"	X	369238.92	중부	4.28	대야면 지경리 1646-10	2014. 05.09	철재
		Y	180978.64	126°47'24"	Y	181051.21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6	52369	X	268899.36	35°55'13"	X	369205.98	중부	4.32	대야면 지경리 1644-14	2014. 05.09	철재
		Y	181112.82	126°47'30"	Y	181185.40					
7	52370	X	268788.02	35°55'09"	X	369094.64	중부	4.46	대야면 지경리 1645-18	2014. 05.09	철재
		Y	181149.02	126°47'31"	Y	181221.60					
8	52371	X	268595.24	35°55'03"	X	368901.86	중부	4.42	회현면 증석리 98-1	2014. 05.09	철재
		Y	181223.24	126°47'34"	Y	181295.82					
9	52372	X	268520.52	35°55'00"	X	368827.14	중부	4.55	회현면 증석리 95-15	2014. 05.09	철재
		Y	181027.63	126°47'26"	Y	181100.21					
10	52373	X	268446.5	35°54'58"	X	368753.11	중부	4.69	회현면 증석리 111-1	2014. 05.09	철재
		Y	180837.22	126°47'19"	Y	180909.81					
11	52374	X	268328.03	35°54'54"	X	368634.63	중부	4.73	회현면 증석리 617	2014. 05.09	철재
		Y	180538.96	126°47'07"	Y	180611.56					
12	52375	X	268259.86	35°54'52"	X	368566.46	중부	4.71	회현면 증석리 617	2014. 05.09	철재
		Y	180352.14	126°46'59"	Y	180424.73					
13	52376	X	267760.96	35°54'36"	X	368067.58	중부	3.83	회현면 증석리 383-10	2014. 05.09	철재
		Y	180863.99	126°47'20"	Y	180936.59					
14	52377	X	268251.45	35°54'52"	X	368558.06	중부	4.46	회현면 증석리 371-4	2014. 05.09	철재
		Y	180684.78	126°47'13"	Y	180757.37					
15	52378	X	268250.83	35°54'52"	X	368557.44	중부	4.25	회현면 증석리 370-6	2014. 05.09	철재
		Y	180898.94	126°47'21"	Y	180971.53					
16	52379	X	268327.74	35°54'54"	X	368634.36	중부	4.12	회현면 증석리 100-5	2014. 05.09	철재
		Y	181100.36	126°47'29"	Y	181172.95					
17	52380	X	268478.47	35°54'59"	X	368785.09	중부	4.36	회현면 증석리 98-3	2014. 05.09	철재
		Y	181266.88	126°47'36"	Y	181339.46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 영 원 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18	52381	X	268328.57	35°54'54"	X	368635.19	중부	4.28	회현면 증석리 98-8	2014. 05.09	철재
		Y	181324.33	126°47'38"	Y	181396.92					
19	52382	X	268178.78	35°54'49"	X	368485.40	중부	4.27	회현면 증석리 100-9	2014. 05.09	철재
		Y	181157.66	126°47'31"	Y	181230.25					
20	52383	X	267996.34	35°54'43"	X	368302.96	중부	4.23	회현면 증석리 111-13	2014. 05.09	철재
		Y	181012.65	126°47'26"	Y	181085.25					
21	52384	X	268067.94	35°54'46"	X	368374.56	중부	4.31	회현면 증석리 100-12	2014. 05.09	철재
		Y	181200.94	126°47'33"	Y	181273.54					
22	52385	X	268136.92	35°54'48"	X	368443.54	중부	4.50	회현면 증석리 98-15	2014. 05.09	철재
		Y	181398.40	126°47'41"	Y	181470.99					
23	52386	X	268029.30	35°54'44"	X	368335.92	중부	4.28	회현면 증석리 98-18	2014. 05.09	철재
		Y	181438.90	126°47'43"	Y	181511.50					
24	52387	X	267879.40	35°54'40"	X	368186.03	중부	4.50	회현면 증석리 645-3	2014. 05.09	철재
		Y	181605.06	126°47'49"	Y	181677.65					
25	52388	X	267806.64	35°54'37"	X	368113.27	중부	4.51	회현면 증석리 99-25	2014. 05.09	철재
		Y	181418.23	126°47'42"	Y	181490.83					
26	52389	X	267879.88	35°54'40"	X	368186.50	중부	4.27	회현면 증석리 100-17	2014. 05.09	철재
		Y	181271.76	126°47'36"	Y	181344.35					
27	52390	X	267730.14	35°54'35"	X	368036.77	중부	4.37	회현면 증석리 111-23	2014. 05.09	철재
		Y	181219.46	126°47'34"	Y	181292.07					
28	52391	X	267838.74	35°54'38"	X	368145.35	중부	3.96	회현면 증석리 381-7	2014. 05.09	철재
		Y	181057.55	126°47'27"	Y	181130.15					
29	52392	X	267655.70	35°54'32"	X	367962.31	중부	4.94	회현면 증석리 381-31	2014. 05.09	철재
		Y	181020.85	126°47'26"	Y	181093.46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 영 원 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30	52393	X	267915.04	35°54'41"	X	368221.65	중부	3.98	회현면 증석리 624	2014. 05.09	철재
		Y	180920.33	126°47'22"	Y	180992.93					
31	52394	X	268033.08	35°54'44"	X	368339.69	중부	4.45	회현면 증석리 371-9	2014. 05.09	철재
		Y	180768.78	126°47'16"	Y	180841.38					
32	52395	X	267848.04	35°54'38"	X	368154.66	중부	3.82	회현면 증석리 383-1	2014. 05.09	철재
		Y	180830.75	126°47'18"	Y	180903.35					
33	52396	X	267726.71	35°54'35"	X	368033.32	중부	4.08	회현면 증석리 383-3	2014. 05.09	철재
		Y	180775.59	126°47'16"	Y	180848.20					
34	52397	X	267581.85	35°54'30"	X	367888.46	중부	4.24	회현면 증석리 383-9	2014. 05.09	철재
		Y	180831.45	126°47'18"	Y	180904.06					
35	52398	X	267502.77	35°54'27"	X	367809.38	중부	4.46	회현면 증석리 386-10	2014. 05.09	철재
		Y	180625.58	126°47'10"	Y	180698.19					
36	52399	X	267669.19	35°54'33"	X	367975.80	중부	3.34	회현면 증석리 385-6	2014. 05.09	철재
		Y	180581.52	126°47'12"	Y	180654.13					
37	52400	X	267730.90	35°54'35"	X	368037.51	중부	4.18	회현면 증석리 384-1	2014. 05.09	철재
		Y	180659.08	126°47'12"	Y	180731.69					
38	52401	X	267802.92	35°54'37"	X	368109.52	중부	4.57	회현면 증석리 385-12	2014. 05.09	철재
		Y	180522.43	126°47'06"	Y	180595.04					
39	52402	X	268030.98	35°54'44"	X	368337.58	중부	4.61	회현면 증석리 374-13	2014. 05.09	철재
		Y	180435.29	126°47'03"	Y	180507.89					
40	52403	X	267990.27	35°54'43"	X	368296.88	중부	3.72	회현면 증석리 621	2014. 05.09	철재
		Y	180667.84	126°47'12"	Y	180740.44					
41	52404	X	267843.58	35°54'38"	X	368150.18	중부	4.27	회현면 증석리 373-11	2014. 05.09	철재
		Y	180616.82	126°47'10"	Y	180689.42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 영 원 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42	52405	X	270830.72	35°56'15"	X	371137.11	중부	6.37	옥 구 읍 옥 정 리 320-4 1	2014. 05.09	철재
		Y	172495.43	126°41'46"	Y	172567.96					
43	52406	X	270658.40	35°56'09"	X	370964.79	중부	9.14	옥 구 읍 옥 정 리 산124- 1	2014. 05.09	철재
		Y	172577.62	126°41'49"	Y	172650.16					
44	52407	X	270504.51	35°56'04"	X	370810.90	중부	10.10	옥 구 읍 옥 정 리 산193- 2	2014. 05.09	철재
		Y	172590.84	126°41'49"	Y	172663.38					
45	52408	X	270432.95	35°56'02"	X	370739.35	중부	13.26	옥 구 읍 옥 정 리 436-1	2014. 05.09	철재
		Y	172661.91	126°41'52"	Y	172734.45					
46	52409	X	270363.33	35°55'59"	X	370669.73	중부	9.00	옥 구 읍 옥 정 리 산191- 1	2014. 05.09	철재
		Y	172825.69	126°41'59"	Y	172898.24					
47	52410	X	270256.18	35°55'56"	X	370562.59	중부	6.09	옥 구 읍 옥 정 리 382-6	2014. 05.09	철재
		Y	172910.98	126°42'02"	Y	172983.52					
48	52411	X	270379.21	35°55'60"	X	370685.62	중부	6.35	옥 구 읍 옥 정 리 178-3	2014. 05.09	철재
		Y	173106.34	126°42'10"	Y	173178.88					
49	52412	X	270613.05	35°56'08"	X	370919.46	중부	9.22	옥 구 읍 옥 정 리 128-1	2014. 05.09	철재
		Y	173184.43	126°42'13"	Y	173256.96					
50	52413	X	270719.94	35°56'11"	X	371026.35	중부	11.00	옥 구 읍 옥 정 리 113-2	2014. 05.09	철재
		Y	173298.44	126°42'18"	Y	173370.97					
51	52414	X	270466.30	35°56'03"	X	370772.71	중부	9.02	옥 구 읍 옥 정 리 129-2	2014. 05.09	철재
		Y	173237.50	126°42'15"	Y	173310.04					
52	52415	X	270213.16	35°55'55"	X	370519.56	중부	8.89	옥 구 읍 옥 정 리 202-2	2014. 05.09	철재
		Y	173188.24	126°42'13"	Y	173260.78					
53	52416	X	270140.12	35°55'52"	X	370446.52	중부	6.57	옥 구 읍 옥 정 리 382-6	2014. 05.09	철재
		Y	172992.92	126°42'06"	Y	173065.46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원체고 (m)							
54	52417	X	270089.86	35°55'51"	X	370396.27	중부	8.98	옥구읍 옥정리 190-6	2014. 05.09	철재
		Y	173105.74	126°42'10"	Y	173178.29					
55	52418	X	269939.11	35°55'46"	X	370245.52	중부	9.60	옥구읍 옥정리 245-3	2014. 05.09	철재
		Y	173060.36	126°42'08"	Y	173132.92					
56	52419	X	269759.72	35°55'40"	X	370066.13	중부	17.55	옥구읍 옥정리 산147	2014. 05.09	철재
		Y	173233.69	126°42'15"	Y	173306.25					
57	6161	X	273804.41	35°57'51"	X	374110.91	중부	5.87	미장동 56-12 1	2014. 06.18	철재
		Y	175282.39	126°43'36"	Y	175354.68					
58	6162	X	272898.92	35°57'22"	X	373205.42	중부	7.89	지곡동 557-3	2014. 06.18	철재
		Y	174041.07	126°42'47"	Y	174113.38					
59	6163	X	272893.87	35°57'22"	X	373200.36	중부	11.15	지곡동 553-6	2014. 06.18	철재
		Y	173861.60	126°42'40"	Y	173933.91					
60	6164	X	272900.37	35°57'22"	X	373206.86	중부	11.53	지곡동 526-4	2014. 06.18	철재
		Y	173780.05	126°42'37"	Y	173852.36					
61	6165	X	272910.09	35°57'22"	X	373216.58	중부	12.96	지곡동 523-2	2014. 06.18	철재
		Y	173694.42	126°42'33"	Y	173766.73					
62	6166	X	273004.19	35°57'25"	X	373310.68	중부	13.62	지곡동 529	2014. 06.18	철재
		Y	173694.96	126°42'33"	Y	173767.26					
63	6167	X	273006.97	35°57'25"	X	373313.45	중부	12.81	지곡동 528	2014. 06.18	철재
		Y	173722.35	126°42'34"	Y	173794.65					
64	6168	X	273005.31	35°57'25"	X	373311.80	중부	10.98	지곡동 525	2014. 06.18	철재
		Y	173809.57	126°42'38"	Y	173881.88					
65	6169	X	273008.00	35°57'25"	X	373314.49	중부	10.54	지곡동 549-6	2014. 06.18	철재
		Y	173841.27	126°42'39"	Y	173913.58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 - 분 - 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 - 분 - 초)							
				타원체고 (m)							
66	6170	X	273055.78	35°57'27"	X	373362.26	중부	9.97	지곡동 533-4	2014. 06.18	철재
		Y	173825.94	126°42'38"	Y	173898.25					
67	6171	X	273043.32	35°57'26"	X	373349.82	중부	9.05	지곡동 549-3	2014. 06.18	철재
		Y	173903.26	126°42'41"	Y	173975.57					
68	6172	X	273057.96	35°57'27"	X	373364.45	중부	8.10	지곡동 562-13	2014. 06.18	철재
		Y	173965.20	126°42'44"	Y	174037.51					
69	6173	X	273180.26	35°57'31"	X	373486.75	중부	5.81	지곡동 543-7	2014. 06.18	철재
		Y	173954.97	126°42'44"	Y	174027.28					
70	6174	X	273220.80	35°57'32"	X	373527.30	중부	5.70	지곡동 568-4	2014. 06.18	철재
		Y	174001.72	126°42'45"	Y	174074.03					
71	6175	X	273255.11	35°57'33"	X	373561.60	중부	5.73	지곡동 540	2014. 06.18	철재
		Y	173825.50	126°42'38"	Y	173897.81					
72	6176	X	273221.13	35°57'32"	X	373527.62	중부	8.02	지곡동 539-9	2014. 06.18	철재
		Y	173807.49	126°42'38"	Y	173879.79					
73	6177	X	273169.43	35°57'31"	X	373475.92	중부	7.14	지곡동 545	2014. 06.18	철재
		Y	173840.71	126°42'39"	Y	173913.02					
74	6178	X	273099.79	35°57'28"	X	373406.28	중부	8.94	지곡동 545-3	2014. 06.18	철재
		Y	173839.97	126°42'39"	Y	173912.27					
75	6179	X	273089.04	35°57'28"	X	373395.53	중부	8.86	지곡동 548-1	2014. 06.18	철재
		Y	173859.96	126°42'40"	Y	173932.27					
76	6180	X	273063.84	35°57'27"	X	373370.33	중부	16.92	지곡동 517-9	2014. 06.18	철재
		Y	173644.12	126°42'31"	Y	173716.43					
77	6181	X	272984.74	35°57'24"	X	373291.23	중부	15.53	지곡동 519-5	2014. 06.18	철재
		Y	173626.59	126°42'30"	Y	173698.90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 - 분 - 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 - 분 - 초)							
				타원체고 (m)							
78	6182	X	272930.66	35°57'23"	X	373237.14	중부	15.72	지곡동 522	2014. 06.18	철재
		Y	173507.03	126°42'26"	Y	173579.34					
79	6183	X	272977.19	35°57'24"	X	373283.67	중부	18.18	지 곡 동 503	2014. 06.18	철재
		Y	173487.66	126°42'25"	Y	173559.97					
80	6184	X	273021.69	35°57'26"	X	373328.17	중부	22.41	지곡동 502-3	2014. 06.18	철재
		Y	173383.41	126°42'21"	Y	173455.72					
81	6185	X	273111.38	35°57'29"	X	373417.86	중부	23.56	지곡동 506-8	2014. 06.18	철재
		Y	173528.42	126°42'27"	Y	173600.72					
82	6186	X	273165.68	35°57'30"	X	373472.16	중부	28.94	지곡동 493-5	2014. 06.18	철재
		Y	173390.94	126°42'21"	Y	173463.24					
83	6187	X	273199.43	35°57'31"	X	373505.91	중부	23.63	지곡동 493-9	2014. 06.18	철재
		Y	173309.58	126°42'18"	Y	173381.89					
84	6188	X	273221.04	35°57'32"	X	373527.52	중부	11.64	지곡동 512-1 1	2014. 06.18	철재
		Y	173705.02	126°42'34"	Y	173777.33					
85	6189	X	275506.50	35°58'46"	X	375812.98	중부	7.10	삼학동 261-3 5	2014. 06.18	철재
		Y	173998.75	126°42'45"	Y	174071.02					
86	6190	X	275499.59	35°58'46"	X	375806.06	중부	10.63	삼학동 886-1	2014. 06.18	철재
		Y	173934.46	126°42'42"	Y	174006.73					
87	6191	X	275502.89	35°58'46"	X	375809.37	중부	5.24	삼학동 886-1	2014. 06.18	철재
		Y	174088.67	126°42'49"	Y	174160.94					
88	6192	X	275415.28	35°58'43"	X	375721.75	중부	5.10	삼학동 269-5	2014. 06.18	철재
		Y	174108.11	126°42'49"	Y	174180.38					
89	6193	X	275378.79	35°58'42"	X	375685.27	중부	4.88	미원동 344-2	2014. 06.18	철재
		Y	174134.69	126°42'50"	Y	174206.96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 - 분 - 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 - 분 - 초)							
				타원체고 (m)							
90	6194	X	275360.14	35°58'42"	X	375666.63	중부	5.08	미원동 347	2014. 06.18	철재
		Y	174178.84	126°42'52"	Y	174251.12					
91	6195	X	275348.77	35°58'41"	X	375655.25	중부	4.97	미원동 343-6	2014. 06.18	철재
		Y	174225.81	126°42'54"	Y	174298.08					
92	6196	X	275263.35	35°58'38"	X	375569.84	중부	5.12	삼학동 289-9	2014. 06.18	철재
		Y	174221.89	126°42'54"	Y	174294.16					
93	6197	X	275216.44	35°58'37"	X	375522.92	중부	5.60	삼학동 285-2	2014. 06.18	철재
		Y	174164.59	126°42'52"	Y	174236.86					
94	6198	X	275272.75	35°58'39"	X	375579.22	중부	14.15	삼학동 275-1 8	2014. 06.18	철재
		Y	174120.85	126°42'50"	Y	174193.12					
95	6199	X	275294.59	35°58'39"	X	375601.07	중부	15.73	삼학동 272-9	2014. 06.18	철재
		Y	174096.41	126°42'49"	Y	174168.68					
96	6200	X	275269.68	35°58'39"	X	375576.16	중부	18.80	삼학동 275-5 7	2014. 06.18	철재
		Y	174072.34	126°42'48"	Y	174144.62					
97	6201	X	275250.39	35°58'38"	X	375556.87	중부	15.70	삼학동 278-3	2014. 06.18	철재
		Y	174039.68	126°42'47"	Y	174111.95					
98	6202	X	275287.58	35°58'39"	X	375594.06	중부	16.82	삼학동 278-6	2014. 06.18	철재
		Y	173997.93	126°42'45"	Y	174070.21					
99	6203	X	275371.95	35°58'42"	X	375678.43	중부	8.37	삼학동 888-7 9	2014. 06.18	철재
		Y	173935.31	126°42'42"	Y	174007.58					
100	6204	X	275425.89	35°58'44"	X	375732.36	중부	8.27	삼학동 268-6 7	2014. 06.18	철재
		Y	173995.05	126°42'45"	Y	174067.32					
101	6205	X	275387.98	35°58'43"	X	375694.46	중부	12.91	삼학동 268-62	2014. 06.18	철재
		Y	174020.47	126°42'46"	Y	174092.75					

번호	기 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102	6206	X	275332.11	35°58'41"	X	375638.68	중부	14.26	삼학동 275-43	2014. 06.18	철재
		Y	174067.00	126°42'48"	Y	174139.23					
103	6207	X	276160.26	35°59'08"	X	376466.76	중부	4.50	구암동 488-27	2014. 06.18	철재
		Y	176333.97	126°44'18"	Y	176406.21					
104	6208	X	276202.62	35°59'09"	X	376509.13	중부	4.05	구암동 488-14	2014. 06.18	철재
		Y	176407.84	126°44'21"	Y	176480.08					
105	6209	X	276282.65	35°59'12"	X	376589.16	중부	4.07	구암동 601-24	2014. 06.18	철재
		Y	176526.85	126°44'26"	Y	176599.10					
106	6210	X	276257.84	35°59'11"	X	376564.35	중부	4.29	구암동 355-9	2014. 06.18	철재
		Y	176576.55	126°44'28"	Y	176648.80					
107	6211	X	276186.17	35°59'09"	X	376492.68	중부	5.70	구암동 370	2014. 06.18	철재
		Y	176640.59	126°44'30"	Y	176712.83					
108	6212	X	276148.19	35°59'07"	X	376454.70	중부	6.04	구암동 368-4	2014. 06.18	철재
		Y	176623.93	126°44'30"	Y	176696.18					
109	6213	X	276094.58	35°59'06"	X	376401.09	중부	7.78	구암동 349-3	2014. 06.18	철재
		Y	176605.98	126°44'29"	Y	176678.23					
110	6214	X	276121.72	35°59'07"	X	376428.23	중부	3.93	구암동 354-3	2014. 06.18	철재
		Y	176523.10	126°44'26"	Y	176595.34					
111	6215	X	276076.96	35°59'05"	X	376383.47	중부	4.07	구암동 324-8	2014. 06.18	철재
		Y	176497.71	126°44'25"	Y	176569.96					
112	6216	X	275987.93	35°59'02"	X	376294.44	중부	4.43	구암동 331-5	2014. 06.18	철재
		Y	176659.22	126°44'31"	Y	176731.46					
113	6217	X	276093.37	35°59'06"	X	376399.88	중부	6.87	구암동 381-8	2014. 06.18	철재
		Y	176794.18	126°44'37"	Y	176866.42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 - 분 - 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 - 분 - 초)							
				타원체고 (m)							
114	6218	X	276369.76	35°59'15"	X	376676.27	중부	4.44	구암동 601-101	2014. 06.18	철재
		Y	176944.78	126°44'42"	Y	177017.02					
115	6219	X	276134.16	35°59'07"	X	376440.68	중부	4.47	구암동 262-8	2014. 06.18	철재
		Y	177041.53	126°44'46"	Y	177113.77					
116	6220	X	276013.48	35°59'03"	X	376319.99	중부	4.62	구암동 269-3	2014. 06.18	철재
		Y	177102.68	126°44'49"	Y	177174.92					
117	6221	X	275831.04	35°58'57"	X	376137.56	중부	5.01	구암동 275-1	2014. 06.18	철재
		Y	177195.30	126°44'53"	Y	177267.54					
118	6222	X	275630.66	35°58'51"	X	375937.18	중부	5.49	구암동 308-6	2014. 06.18	철재
		Y	177296.52	126°44'57"	Y	177368.77					
119	6223	X	272584.47	35°57'12"	X	372890.96	중부	4.50	지곡동 18-2	2014. 05.19	철재
		Y	174177.76	126°42'53"	Y	174250.11					
120	6224	X	272670.00	35°57'14"	X	372976.49	중부	5.44	지곡동 29-1	2014. 05.19	철재
		Y	174004.88	126°42'46"	Y	174077.24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063-454-3964)

군산시 공고 제2014 - 1002호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공고

「임대주택법」 제6호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동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등록말소하고, 동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18.

군 산 시 장

1. 공고명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2. 등록말소 근거 : 임대주택법 제15조
3. 공고 내용

등록번호	2012-군산시-임대사업자-30	말소사유
최초등록일	2012. 07. 09.	등록기준 미달
성 명	조*준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4*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 주택행정계(☎ 063-454-3703)으로 문의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4-1042호

2013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4. 6. .

군 산 시 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13년도 10월에 제24호 태풍 다나스 등 일부 집중호우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예년과 달리 커다란 재난피해 발생은 없는 한 해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 실적으로는
 - 2013년도 재난에 대비할 조직은 1개과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 평균과 1명이 총원되었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경보전달체계는 5종으로 44개소에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보다 28개소가 증가하였고, 지난해보다 9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 적립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은 1,124백만원으로 1,124백만원 확보되어 100%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728백만원 보다 395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14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415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99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95백만원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6등급으로 위험에 가깝습니다.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건축물등 7종 71개 시설물로서 40개 시설이 내진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56% 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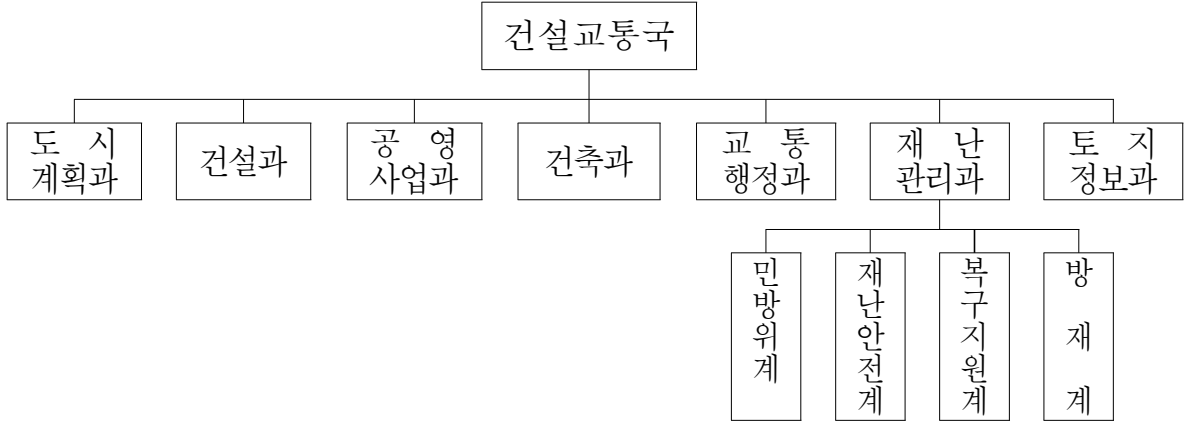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해당사항 없음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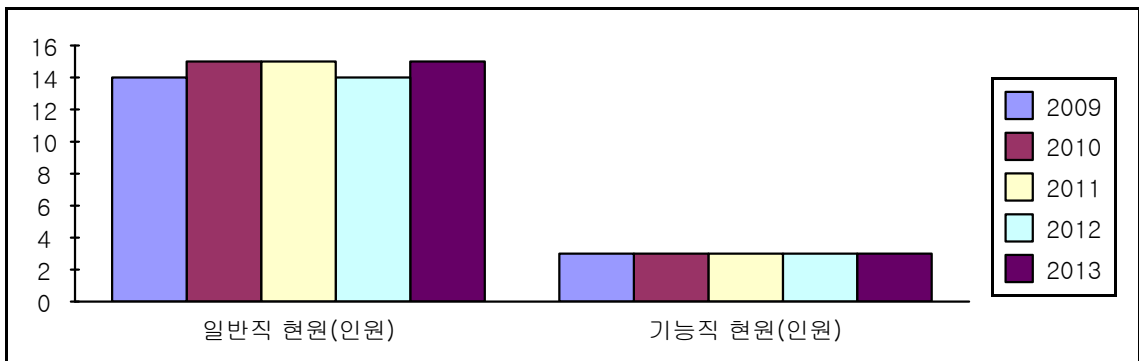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8	16		1	4	6	3	2	2
	현원	18	16		1	4	6	3	1	3
재 난 관리과	정원	18	16		1	4	6	3	2	2
	현원	18	15		1	4	6	3	1	3

◆ 연도별 비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일반직 현원(인원)	14	15	15	14	15
기능직 현원(인원)	3	3	3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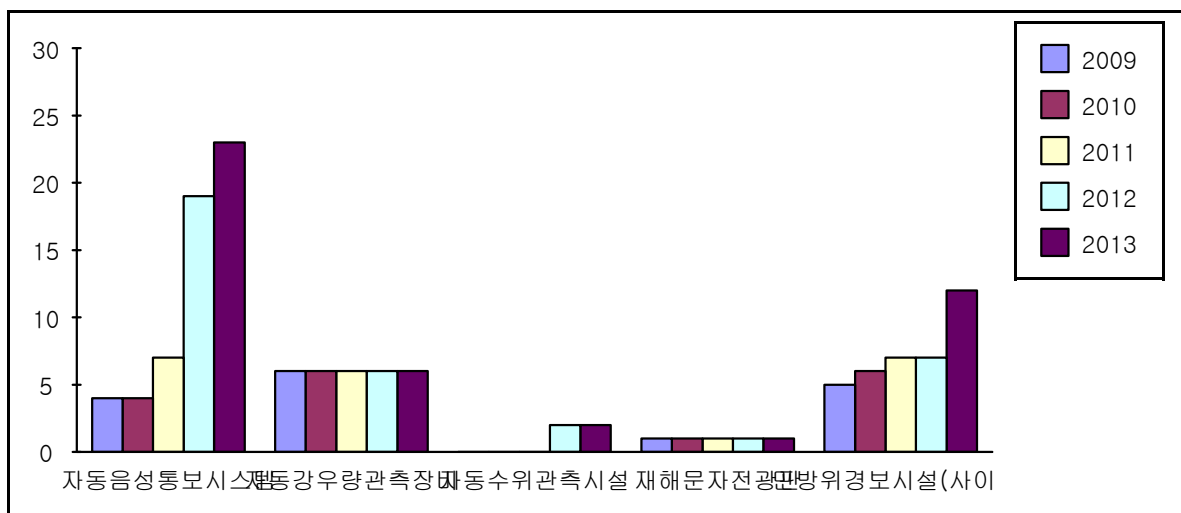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3	옥도 말도 146 등 23개소
자동강우량관측장비	6	군산시청 등 6개소
자동수위관측시설	2	수송동 7-103 등 2개소
재해문자전광판	1	군산항 여객터미널 1개소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2	

◆ 연도별 비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	4	7	19	23
자동강우량관측장비	6	6	6	6	6
자동수위관측시설	0	0	0	2	2
재해문자전광판	1	1	1	1	1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5	6	7	7	12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겨울철사전대비 협업기능 권역별 순회교육	13.11.26	소방방재청	2명	
하천관리담당자 교육	13. 7.23	한강홍수통제소	1명	
비상대비업무 관계관 교육	13.10.15	전라북도	1명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13.11. 7	부안군 대명리조트	4명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샵	소방방재청	

다.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재난심리 지원교육	2013.12. 26	군산시청 재난종합상황실	60	홍보 영상물 상영	재 난 관리과	

라.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을지연습	비상사태 대비절차 방법등	8.19	관내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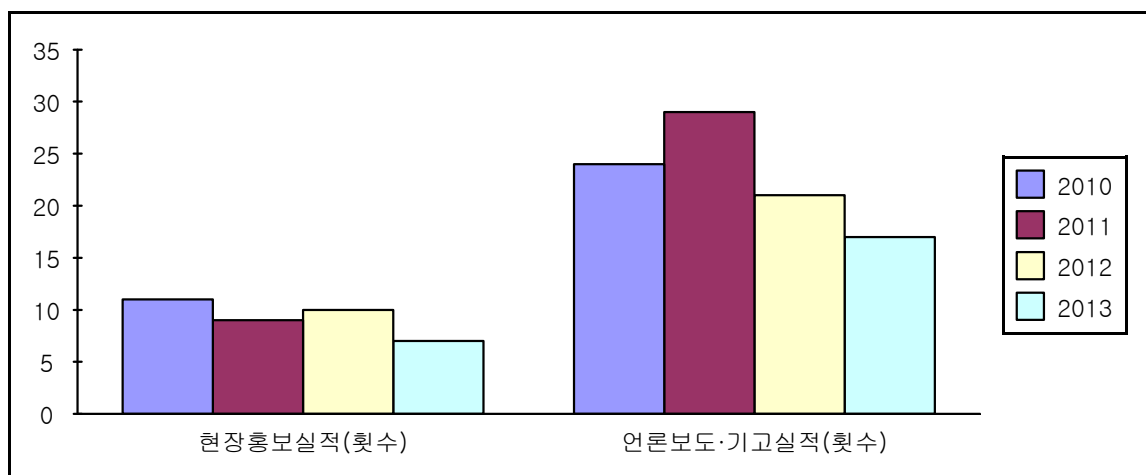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비고
1	군산시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실시	통합방위 협의회 홍보	12.23	
2	안전문화운동 추진 군산시 협의회 출범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출범 홍보	12.06	
3	공동주택 붕괴에 따른 초기대응 태세 점검 자체훈련실시	공동주택 붕괴에 따른 자체 점검 훈련실시	11.13	
4	군산시, 2013 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중점관리자원 확인 행사홍보	10.21	
5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10.04	
:	:	:	:	

※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및 케이블방송 포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0	2011	2012	2013
현장홍보실적(횟수)	11	9	10	7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24	29	21	17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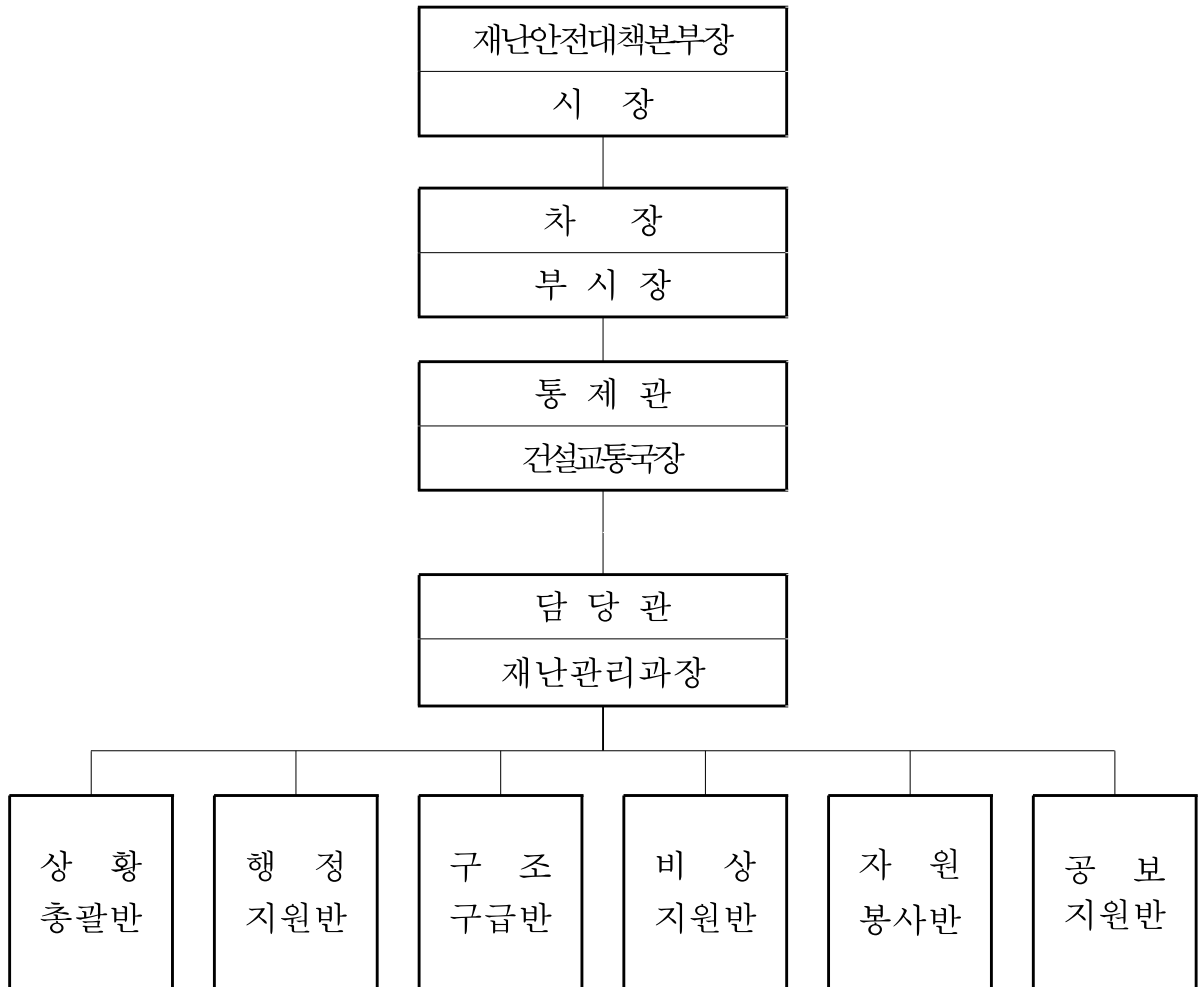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시장 • 위원 : 1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심의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건설교통국장 • 위원 : 1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될 안전 사전검토 • 재난관련 기관간 협조사항 정리 •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도모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 :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구역내의 재난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 •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 • 복구사업 실시 및 감독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 내용 보고 • 시장 → 도지사 → 안전행정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 조직



※ 실무반 구성은 지자체 풍수해 재난관리 운영규정에 준함, 다만 홍수대책팀은 상황총괄반과 통합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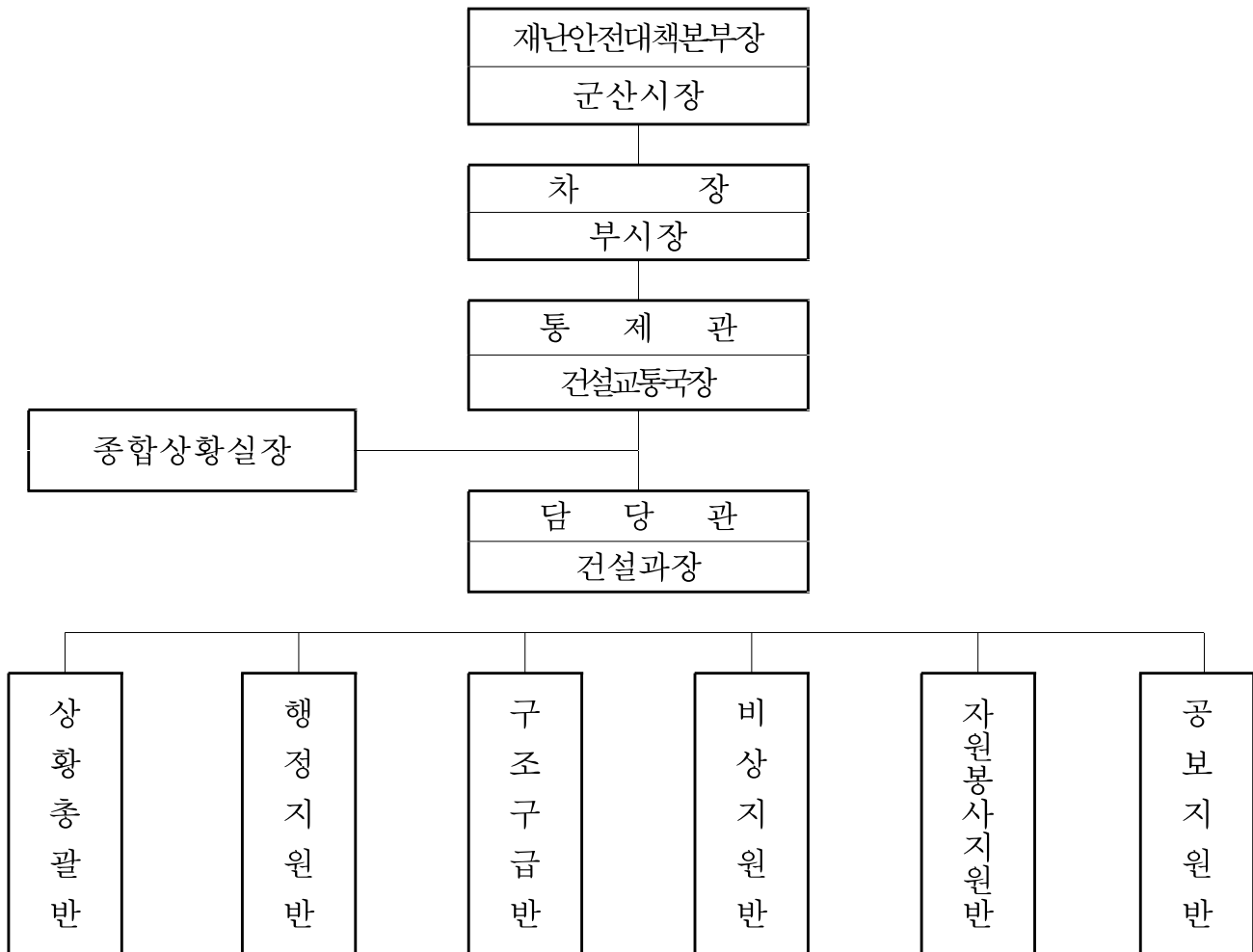
□ 실무반 임무 및 역할

- 상황총괄반 : 재난관리과
 - 일일 상황보고서작성 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입력
 - 재난진행상황 파악, 전달, 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현장 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활동 지원
 - 특별지시사항 처리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행정지원반 : 총무과
 - 주요인사방문 의전, 상황근무명령, 복무단속 및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 구조구급반 : 군산소방서
 - 구조·구급 총괄 및 기타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자재·장비확보 및 군병력 장비지원
 - 동별 응급복구 현황 파악
 -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상하수도, 주택, 사회공공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응급복구 추진사항 지원 확인 등
 - 수산시설 응급복구 및 선박 입·출항 통제
 - 비상지원반 :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관광진흥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농정과, 수도과
 - 응급복구, 민방위대, 군·경 협조 및 기타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 부상자 의료지원,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전염병 예방 방역 소독, 기동의료반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재난쓰레기 수거 처리 및 임시 야적장 설치 운영
 - 자원봉사지원반 :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사회봉사단체
 -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사항
 - 수해지역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공보지원반 : 공보담당관
 - 재난상황별 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기타 공보지원에 필요한 사항
-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풍수해 · 설해]

○ 현장지휘본부 편성도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임무 및 역할	전화번호
군산경찰서	○ 각 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 연락 체제 구축하며, 필요시 상황실 근무	441-0255
군산소방서		445-0203
육군제9585부대		464-9113
가스안전공사		272-0019
한전군산지점		440-2283
전기안전공사		452-0853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군산시재난안전 대책본부운영조례	자연·인적·기반재난에 대비한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	2005.5.13	
군산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2005.6.13	
군산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2005.6.13	
군산시재난종합 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재난상황보고를 신속히 수행하고 종합적인 상황관리를 통하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	2006.2.28	
군산시재난 예·경보운영규정	재난 예·경보에 필요한 사항	2005.10.25	
군산시안전관리 위원회운영조례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한 필요한 세부사항	2005.02.05	
군산시안전관리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사항	2005.5.1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 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6)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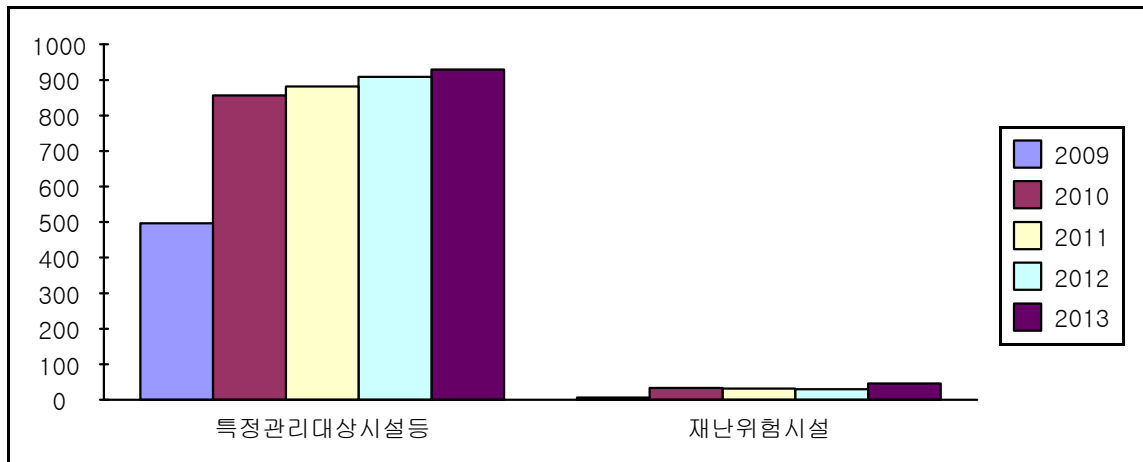
총 계	시설물					건축물										비고
	소계	교량	육교	축대옹벽	기타	소계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축공사장	위험물시설	공장		
929	28	18	1	3	1	5	901	20	496	335	9	18	23	1		

[등급별]

구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고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929	883	493	337	53	46	45	1	
시설물	28	24	4	15	5	4	4	0	
건축물	901	859	489	322	48	42	41	1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특정관리대상시설등	497	856	882	909	929
재난위험시설	6	33	32	30	46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년도
공동 주택	주공3단지	27동	주공3	2010	재건축	24,300	지정고시	2017
교량	삼라교 외	3개소	군산시	2001	재가설	13,000	차량제한	2017

나. 특정관리 대상시설등 정비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반기	13.1~6	260	3	9	안전관리 자문단	조치완료
하반기	13.7~12	264	5	33	소방방재청	조치완료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 웬스	유흡 착제	흡착물	유처 리제		
		km	천매	km	kl		
총계	104.3	6.1	78.1	0.1	20		

[의료시설]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11	49	168	11	650	52
병 원	2	11	32	3	175	0
보건소	1	5	14	2	0	0
기 타	8	33	122	6	475	52

[수용시설]

구분	합 계		옥구		옥산		회현		임피		서수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44	12,797	1	150	1	212	1	221	1	1,050	1	997

대야		개정면		성산		나포		옥도		옥서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1	300	1	1,186	1	750	1	85	7	143	1	200

해신		월명		삼학		문화		중동		장재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1	36	1	296	1	150	2	66	1	50	1	400

미원		조촌		구암		개정동		수송		미장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1	396	1	30	1	15	3	89	8	1,112	2	187

지곡		나운		미룡		소룡		미성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2	637	3	720	1	1,860	1	1,061	3	580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구조장비

구분	계	구조용로프	구명보트	구명환	구명동의	비고
총계	157	3	1	3	150	

◆ 복구장비

구분	계	굴삭기	덤프	로우더	청소차	기타
총계	196	63	89	6	22	16

◆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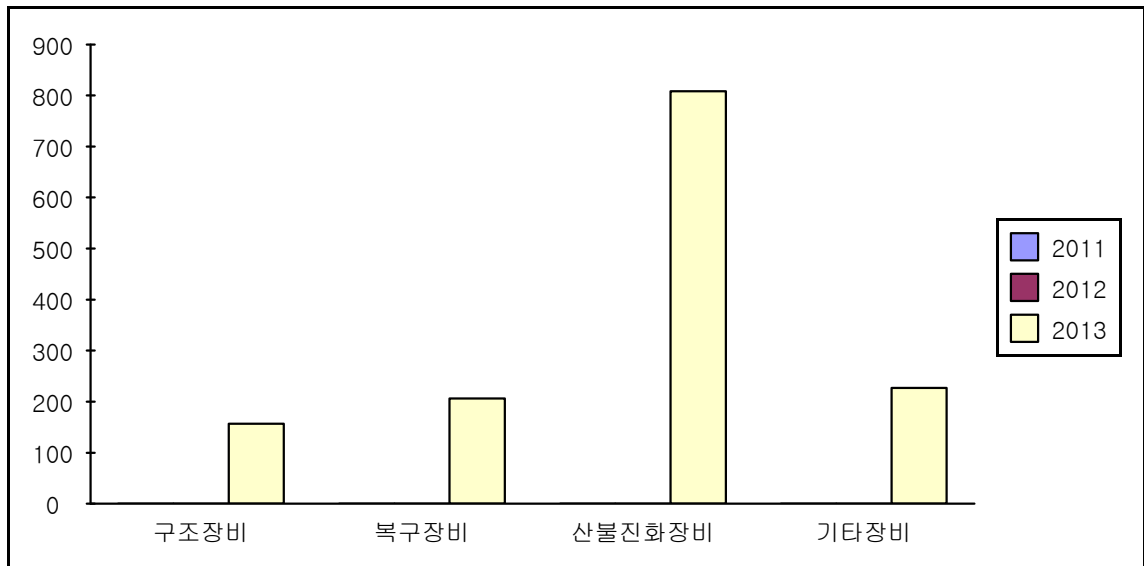
구분	계	헬기 보유	헬기 임차	산불 진화차	동력 펌프	등짐 펌프	동력 톱	휴대용무전기	무선기지국	차량이동국	쌍안경	휴대폰	밤비버켓	짬차	화물차	간이수조	진화도구	진화안전장비 세트	기타
계	808	0	1	4	10	90	7	114	1	4	2	0	0	0	1	0	0	22	552

◆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컴프레샤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절단기	화학차	전기복구차	가스복구차	통신복구차	제독차	기타
계	227	3	2	31	12	0	1	16	2	4	1	5	2	148

◇ 연도별 비교

구분	2011	2012	2013
구조장비			157
복구장비			206
산불진화장비			808
기타장비			227



[인력지정]

◆ 기술인력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원자력	삭제도	유기장	기타
38	0	10	1	12	9	0	3	0	0	0	3

◆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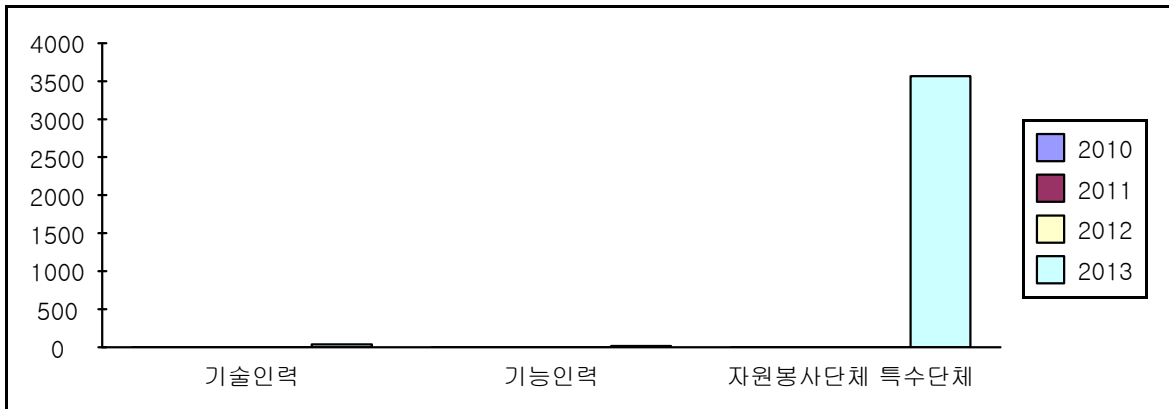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운전	중기정비	배관공	승강기 안전관리원	기타
19	0	0	0	0	0	1	0	18	0	0	0	0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산악 구조대	수중 구조대	아마추어 무선 봉사대	기타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병 전우회	모범 운전자회	여성 단체 협의회	기타
인원	3567	600	0	0	0	0	230	0	150	87	0	2500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기술인력				38
기능인력				19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3,567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3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계	71	40			56
건축물	59	54			91
도로시설물(교량)	59	53			90
폐수종말처리장	1	0			0
수도시설	4	4			100
어항시설	6	2			33
폐기물매립시설	1	1			100
공공하수도시설	7	6			86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내진율	56	56	56

☞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나, 내진 보강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시군구 매뉴얼 관리 현황]

매뉴얼명	소관국 또는 과	매뉴얼 주요내용	당해년 개정내용
지진재난 현장 행동 매뉴얼	재난관리과	지진 재난 행동 요령	내용수정 및 해일추가
풍수해 재난현장 행동 매뉴얼	재난관리과	자연재난 발생시 행동 요령	기상특보등 내용수정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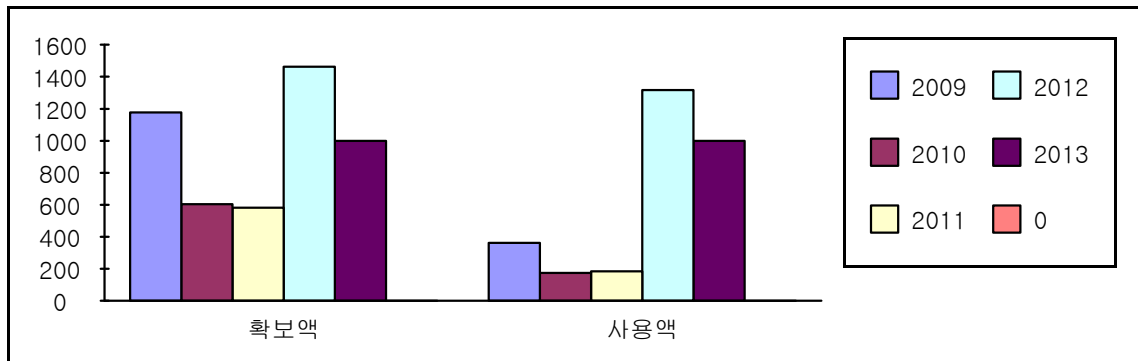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1,124백만원	1,124백만원	1,124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확보액	841	500	200	978	1,124
사용액	243	148	185	507	999



☞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정비 및 재난사전예방 구축사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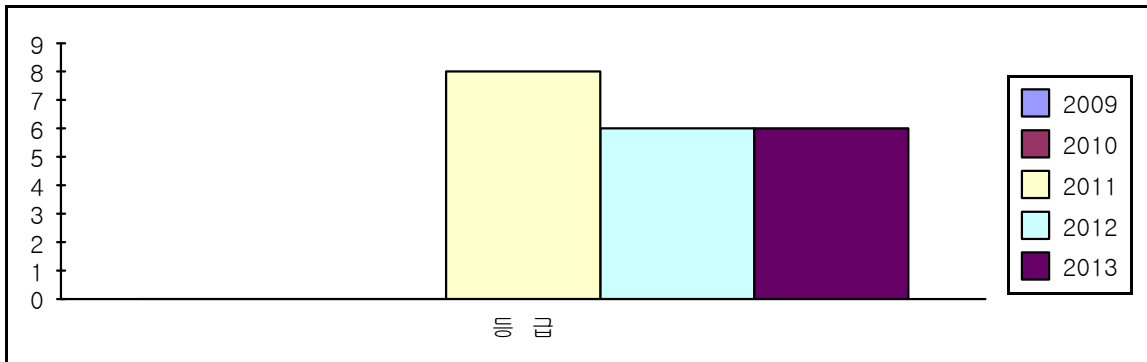
④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급(그룹)
진단결과	0.567	0.927	0.625	6(다)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년도별 등급 비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등 급			8	6	6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군산시 안전총괄과
(담당자 : 오홍재, 전화 : 063)454-386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2014.4.28)에 따라 예규 조문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자 함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군산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4년 7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예규 제 26 호

군산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군산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 제9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 제10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